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8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4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5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15
<input type="checkbox"/>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7일

회 사 명 : (주)에이텍
대 표 이 사 : 한가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삼평동,에이텍빌딩)
(전 화)031-698-8800
(홈페이지)<http://www.ate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한성호
(전 화)031-698-887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365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21조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의 공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03월 24일 (금) 오전 8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에이텍빌딩 9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 1주당 10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제5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3월 19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이텍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부칙(법을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7년 3월 일

실질주주 성 명 : (인)

주 소 :

5.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사항 및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기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3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7년 03월 07일

주식회사 에이텍
대표이사 한가진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디스플레이사업

(1) 산업의 특성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은 차세대 첨단 전자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디지털컨버전스 시대의 중심 산업으로 전후방 기술과급효과가 큼니다. 더불어 기술, 자본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생산공정을 지니고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PC 및 모니터 등 IT 사무기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 수요가 연계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추가 투자분이 발생하여 개인보다는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의 대량 구매가 발생하게 되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투자의 개념으로 부담을 갖기에 그 수요가 확실히 감소하게 됩니다.

PC의 라이프 사이클은 주요 부품들의 신규 출현에 따라 변하며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는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주기를 보이고 있으나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관련 DATA의 볼륨이 커지면서 하드웨어의 사양이 고급화되고 기술향상에 따른 PC 주요 부품과 운영체제(OS)의 출시에 따라 부수적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거나추가 구매하는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IDC의 Worldwide Quarterly PC Tracker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PC 출하대수는 당초 전망치인 -3.3% 보다 저조한 전년대비 -4.9% 성장을 보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세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4분기까지는 당초 전망보다 호전된 1.7% 성장을 보였으나, 경기와 제품의 변화 추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PC 시장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출하대수는 2억9310만대, 2019년에는 2억9140만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액 측면에서 PC 시장은 2014년에 전년대비 0.8% 감소한 2010억달러 규모로 조사됐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6.9%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며 2019년에는 1750억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PC시장은 일반적으로 제품 특성상 주요 부품들의 기능 개선에 따른 신규 부품(CPU, RAM, HDD, OS 등) 출현에 따라 신규 구매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계절적으로는 늦가을 및 겨울, 봄 등 이른 바 겨울 방학시즌과 개학시즌에 가장 수요가 높으며, 늦봄과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PC 관련 업종은 1분기와4분기에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분기와 3분기는 이에 비해 매출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사는 일반 민수시장이 아닌 공공 및 조달시장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보다는 공공기관의 PC 구매 예산 책정 및 집행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 디스플레이사업

(1)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 최초로 국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개념 일체형PC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NET인증,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절전형PC 및 LED모니터, 굿디자인 수상 슬림형PC, 금융모니터, 심장충격기 탑재 광고형 디지털정보게시판(DID), 엘리베이터 DID, RFID 기술을 응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기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망분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에 최적화된 망분리 듀얼PC, 인터넷용 초소형 미니PC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달시장 및 공공부문 등을 타겟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틈새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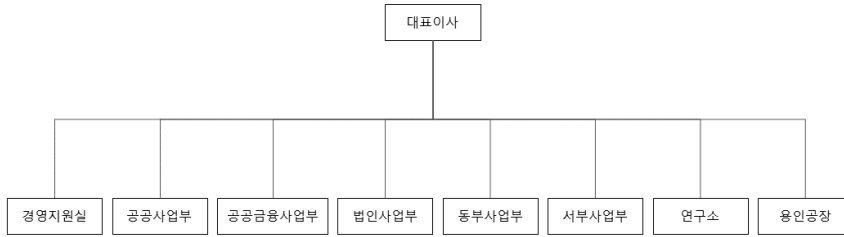
(2) 시장점유율

당사는 공공기관용 PC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말(2016.12.31) 현재 공공기관용PC 조달시장에서 22.4%의 시장 점유율(판매수량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통계분석정보]

(3) 시장의 특성

공공기관용 PC 시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7호 (2012.12.27)』 으로 지정되어 2013년 50%, 2014년 75%, 2015년 이후100%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려 대기업의 공공PC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 부문에 대해 점진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당기 매출액 120,050백만원, 영업이익 5,751백만원, 당기순이익 7,377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전기대비 21.3%, 31.3%, -12.2% 각각 증감된 실적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당사의 핵심사업 분야인 공공부문 PC조달 분야에서 경찰청, 국회사무처, 전국 시도교육청 등 대량 수주 계약에 따른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전기에 관계회사인 에이텍아이엔에스 지분 매각에 따른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 17억이 당기에 미포함되면서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의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4 기 2016. 12. 31 현재

제 23 기 2015.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자산		

I.유동자산	36,693,861,697	23,685,576,244
현금및현금성자산	14,697,928,441	10,580,249,64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31,120,345	8,807,715,703
재고자산	9,407,578,151	3,990,172,662
기타금융자산	281,640,000	14,685,000
기타유동자산	183,806,814	292,753,233
II.비유동자산	36,263,673,253	38,843,527,801
장기금융상품	2,500,000	542,500,00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3,521,574,577	5,328,956,300
관계기업투자	1,323,646,036	1,117,086,996
유형자산	14,392,798,417	14,440,660,684
무형자산	381,030,534	292,585,972
투자부동산	14,996,636,243	15,414,610,40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638,953,320	1,700,593,320
기타비유동자산	6,534,126	6,534,126
자산총계	72,957,534,950	62,529,104,045
부채및자본		
I.유동부채	15,778,916,320	11,615,906,0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148,188,417	8,741,517,634
단기차입금	-	370,804,606
기타유동부채	775,455,349	843,506,771
유동성장기차입금	-	93,750,000
당기법인세부채	1,855,272,554	1,566,327,002
II.비유동부채	3,742,044,911	4,392,427,030
장기차입금	1,160,000,000	-
퇴직급여채무	104,313,556	527,349,201
이연법인세부채	144,383,505	1,016,179,524
총당부채	175,502,050	390,650,305
기타비유동부채	2,157,845,800	2,458,248,000
부채총계	19,520,961,231	16,008,333,043
I.자본금	4,130,000,000	4,130,000,000
II.자본잉여금	9,375,181,391	7,662,995,980
III.기타자본	(20,689,614,292)	(21,183,533,151)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288,578	1,333,657,682
V.이익잉여금	60,539,718,042	54,577,650,491
자본총계	53,436,573,719	46,520,771,002
자본및부채총계	72,957,534,950	62,529,104,04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4 기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23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I.매출액	120,049,858,632	98,988,667,075
II.매출원가	94,679,342,738	75,976,985,633
III.매출총이익	25,370,515,894	23,011,681,442
판매비와관리비	19,619,219,281	18,631,130,033
IV.영업이익	5,751,296,613	4,380,551,409
V.기타손익및금융손익	3,853,336,644	1,534,279,183
기타수익	4,357,409,529	2,258,794,603
기타비용	627,304,035	804,939,182
금융수익	137,641,148	212,203,102
금융비용	14,409,998	131,779,340
VI.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207,691,509	1,538,184,403
지분법이익	207,691,509	37,171,298
지분법손실	-	160,880,885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61,893,990
VI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9,812,324,766	7,453,014,995
VIII.법인세비용	2,435,404,782	721,090,554
IX.계속사업이익	7,376,919,984	6,731,924,441
X.중단영업이익	-	1,674,814,255
XI.당기순이익	7,376,919,984	8,406,738,696
XII.기타포괄손익	(1,877,843,437)	1,626,293,35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51,485,778)	1,377,200,108
지분법자본변동	(883,326)	705,79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보험수리적손익	(625,474,333)	248,387,454
XIII.총포괄이익	5,499,076,547	10,033,032,048
XIV.주당이익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925	788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925	63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4 기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23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24기	제23기
I.미처분이익잉여금		51,511,377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759,931	
2.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625,474)	
3.당기순이익	7,376,920	
II.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033,333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환입	3,033,333	
합 계		54,544,710
III.이익잉여금처분액		908,600
1.이익준비금	82,600	
2.현금배당	826,000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636,110

- 자본변동표

제 24 기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23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5.01.01(기초자본)	6,800,000,000	12,282,964,227	(813,231,495)	(44,248,216)	47,222,524,341	65,448,008,857
연차배당	-	-	-	-	(1,300,000,000)	(1,300,000,000)
처분후이익잉여금	-	-	-	-	45,922,524,341	64,148,008,857
인적분할	(2,670,000,000)	(4,619,968,247)	(20,370,301,656)	-	-	(27,660,269,903)
매도가능평가손익	-	-	-	1,377,200,108	-	1,377,200,108
지분법자본변동	-	-	-	705,790	-	705,790
보험수리적손익	-	-	-	-	248,387,454	248,387,454
당기순이익	-	-	-	-	8,406,738,696	8,406,738,696
2015.12.31(기말자본)	4,130,000,000	7,662,995,980	(21,183,533,151)	1,333,657,682	54,577,650,491	46,520,771,002
2016.01.01(기초자본)	4,130,000,000	7,662,995,980	(21,183,533,151)	1,333,657,682	54,577,650,491	46,520,771,002
연차배당	-	-	-	-	(789,378,100)	(789,378,100)
처분후이익잉여금	-	-	-	-	53,788,272,391	45,731,392,902

자기주식처분	-	1,712,185,411	493,918,859	-	-	2,206,104,270
매도가능평가손익	-	-	-	(1,251,485,778)	-	(1,251,485,778)
지분법자본변동	-	-	-	(883,326)	-	(883,326)
보험수리적손익	-	-	-	-	(625,474,333)	(625,474,333)
당기순이익	-	-	-	-	7,376,919,984	7,376,919,984
2016.12.31(기말자본)	4,130,000,000	9,375,181,391	(20,689,614,292)	81,288,578	60,539,718,042	53,436,573,719

- 현금흐름표

제 24 기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23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3,241,892,296	(134,138,698)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5,638,264,202	656,458,406
가. 당기순이익	7,376,919,984	8,406,738,696
나. 가감	1,541,395,222	1,794,252,070
이자비용	14,409,998	131,779,340
이자수익	(137,641,148)	(212,203,102)
법인세비용	2,435,404,782	1,007,980,447
기타의대손상각비	4,000,000	4,391,615
외화환산손실	29,299,574	2,103,686
감가상각비	796,710,042	792,515,429
투자부동산상각비	281,414,381	258,246,173
무형자산상각비	40,087,785	66,855,006
유형자산처분손실	174,923	177,085
무형자산처분손실	-	297,950,230
무형자산손상차손	2,500,000	100,076,550
퇴직급여	515,664,042	873,212,555
판매보증충당비용	62,093,455	390,650,30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1,961,800	-
지분법손실	-	160,880,885
배당금수익	(25,000,000)	(314,020,496)
외화환산이익	(914,078)	(5,987,053)
대손충당금환입	(6,828,533)	(11,916,906)
유형자산처분이익	(19,835,508)	(31,976,711)
무형자산처분이익	(59,230,363)	(17,397,680)
지분법이익	(207,691,509)	(37,171,29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2,185,184,421)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61,893,990)
다.자산·부채의증감	(3,280,051,004)	(9,544,532,36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187,149,268)	8,690,868,671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927,573,693	(745,452,29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104,946,419	234,070,927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7,802,378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417,405,489)	1,167,869,85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796,852,337	(14,676,016,072)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581,014,294	(3,949,644,706)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68,051,422)	437,091,229
총당부채의 증가	(277,241,710)	-
퇴직금의 지급	(24,921,789)	(4,279,648)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	(1,715,668,069)	(706,842,699)
2.이자수취	82,140,614	197,149,568
3.배당금수취	25,000,000	314,020,496
4.이자지급	(14,905,420)	(132,605,471)
5.법인세의납부	(2,488,607,100)	(1,169,161,697)
II.투자활동현금흐름	(936,896,943)	10,813,239,073
단기금융상품의증가	(5,986,888,335)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2,995,100,389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40,000,000	(120,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23,972,400)	(60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708,607,798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18,953,167,12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14,685,000	27,928,221,235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84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604,331,938)	(987,154,325)
유형자산의 처분	11,704,527	612,828,923
무형자산의 취득	(71,801,984)	(282,713,085)
무형자산의 처분	-	404,023,4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522,902,200)	(61,768,4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302,902,200	32,968,450
III.재무활동현금흐름	1,811,769,364	(11,705,806,230)
배당금의 지급	(789,378,100)	(1,3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7,497,663,495	4,045,904,047
단기차입금의 상환	(7,868,468,101)	(4,521,483,44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93,750,000)	(125,000,000)

장기차입금의차입	1,160,000,00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44,200,000	1,471,050,000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344,602,200)	-
정부보조금의 순증감	-	45,207,388
자기주식의 처분	2,206,104,270	-
인적분할로 인한 감소	-	(10,321,484,224)
물적분할로 인한 감소	-	(1,000,000,000)
IV.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914,078	5,919,320
V.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I + II + III + IV)	4,117,678,795	(1,020,786,535)
VI.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0,580,249,646	11,601,036,181
VII.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4,697,928,441	10,580,249,646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발행주식총수	8,260,000주	8,260,000주
배당주식수	8,260,000주	7,893,781주
주당배당금(원)	100	100
시가배당율(%)	0.9	2.6
총 배당금액(원)	826,000,000	789,378,100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승영	19550115	미해당	최대주주 본인	이사회
구자준	19610121	미해당	-	이사회
문진현	19720923	미해당	-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신승영	(주)에이텍티앤 대표이사	-영남대학교 전자공학 -LG전자 -에이텍	해당사항 없음
구자준	(주)에이텍 공장장	-동아대학교 전자공학 -LG전자, LG엔시스	해당사항 없음
문진현	(주)에이텍 공공사업부장	-홍익대학교 경영정보학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0)	5(0)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분할 회사 또는 분할후 존속회사'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2 및 제 530조의 1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하 '본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1.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법인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각 사업을 전문화하여 사업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 한다.

나.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법인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각 사업을 전문화하여 사업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 한다.

나.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그림_분할개요도)와 같이 분할 회사의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 후 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 분할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후 존속회사	(주)에이텍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할신설회사	(주)에이텍커머스(가칭)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가전제품 도소매업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

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5월 0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하게 적용)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의거 분할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2017년 3월 27일 ~ 2017년 4월 28일) 이상을 두어 동 법령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4)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 후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 후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 후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신설회사와 분할 후 존속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 후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다.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6-12-15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6-12-1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12-15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2016-12-3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03-24
분할기일	2017-05-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7-05-01
분할등기예정일	2017-05-02
기타일정	
주주명부 폐쇄 기간	2017-01-01 ~ 2017-01-07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17-03-09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7-03-27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7-03-27 ~ 2017-04-28

- 주1) '주주확정기준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입니다.
- 주2) 상기 일정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주4) 분할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의 관련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합니다.
- 주5)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분할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본건 분할 이외에 추가적인 분할 등의 구조개편을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향후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 100% 배정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회사로 함

2.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

합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 100% 배정합니다.

나.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분할의 내용

가.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사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가전제품 도소매업 부문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비롯하여 성장성, 안정성,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국내외 시장여건, 경쟁 요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의 특성

PC 및 모니터 등 IT 사무기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 수요가 연계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추가 투자분이 발생하여 개인보다는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의 대량 구매가 발생하게 되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투자의 개념으로 부담을 갖기에 그 수요가 확실히 감소하게 됩니다.

PC의 라이프 사이클은 주요 부품들의 신규 출현에 따라 변하며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는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주기를 보이고 있으나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관련 DATA의 볼륨이 커지면서 하드웨어의 사양이 고급화되고 기술향상에 따른 PC 주요 부품과 운영체제(OS)의 출시에 따라 부수적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거나 추가 구매하는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성장성

IDC의 Worldwide Quarterly PC Tracker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PC 출하대수는 당초 전망치인 -3.3% 보다 저조한 전년대비 -4.9% 성장을 보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세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와 제품의 변화 추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PC 시장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출하대수는 2억9310만대, 2019년에는 2억9140만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액 측면에서 PC 시장은 2015년 하락 이후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며 2019년에는 1,750억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PC 시장은 일반적으로 제품 특성상 주요 부품들의 기능 개선에 따른 신규 부품(CPU, RAM, OS 등) 출현에 따라 신규 구매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계절적으로 늦가을 및 겨울, 봄 등 이른바 겨울 방학시즌과 개학시즌에 가장 수요가 높으며, 늦봄과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PC 관련 업종은 1분기와 4분기에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분기와 3분기는 이들 분기에 비해 매출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PC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국업체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고, 브랜드 투자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후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국내 브랜드 업체가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주력 제품인 PC를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다양한 IT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며, 우수 협력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치열해지는 유통, 공급 시

장에서 오랫동안 거래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사와의 협력 구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분할신설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매출액	29,798	30.1%	27,565	15.5%	24,858	17.3%

주) 비중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 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 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6년 10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으로 하되, 분할기일인 2017년 05월 01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

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과 분할 후 존속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은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 귀속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7)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단위: 백만원)

과목	분할 전 (분할회사)	분할 후	
		분할 후 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37,308	28,920	8,388
II. 비유동자산	36,550	42,616	153
자산총계	73,858	71,535	8,541
I. 유동부채	13,255	11,239	2,017
II. 비유동부채	6,207	5,901	306
부채총계	19,462	17,140	2,322
자본총계	54,396	54,396	6,219
부채및자본총계	73,858	71,535	8,541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10월 31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함

주2)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함

(8) 재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자산은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 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해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상 호	국문명: 주식회사 에이텍
	영문명: ATEC CO., Ltd .
목 적	1.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컴퓨터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컴퓨터 관련 용역의 국내외 제공 및 해외로부터 제공 받는 업무 4.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5.가전제품

	6.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유지보수업 7.정보처리 컨설팅 8.전산업무 개발용역 9.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컨설팅 10.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그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11.부동산임대업 12.산업용디스플레이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13.산업용자동화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14.전기공사업 15.컴퓨터프로그래밍 16.시스템통합 및 관리 17.전기전자 소재,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18.정보통신공사업 19.위 각호에 따른 각종 용역업 및 부대사업일체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삼평동, 에이텍빌딩)]
공 고 방 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tec.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다. 자본감소의 방법

-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라.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 본 보고서 제3편 분할의 내용의 '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및 분할채무상대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따름

마.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수권주식수	-	50,000,000주	50,000,000주	변동사항 없음
발행주식수	보통주	8,260,000주	8,260,000주	변동사항 없음
1주의 금액	보통주	500원	500원	변동사항 없음
자본금	보통주	4,130,000,000원	4,130,000,000원	변동사항 없음
준비금 총액	-	70,998,773,935원	70,998,773,935원	변동사항 없음

주)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은 2016년 10월 31일 현재 재무상 대표를 기준으로 하며,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발행한 주식 없음

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사. 정관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에이텍커머스(가칭) 영문명 : ATEC COMMERCE CO., Ltd.
목적	1.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컴퓨터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컴퓨터 관련 용역의 국내외 제공 및 해외로부터 제공 받는 업무 4.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5.가전제품 6.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유지보수업 7.정보처리 컨설팅 8.전산업무 개발용역 9.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컨설팅 10.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그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11.부동산임대업 12.산업용디스플레이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13.산업용자동화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14.전기공사업 15.컴퓨터프로그래밍 16.시스템통합 및 관리 17.전기전자 소재,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18.정보통신공사업 19.위 각호에 따른 각종 용역업 및 부대사업일체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삼평동, 에이텍빌딩))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tec-commerce.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등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	----

수권주식수	50,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0원)

다.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0원)

주) 상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에 배정함
-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없음

마.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해당사항 없음

바.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1,000,000천원
준비금	5,218,643천원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준비금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최종 확정함

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 본 보고서 제3편 분할의 내용의 '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및 분할채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따름

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 및 사업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자.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현황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차.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습니다. 다만, [첨부3]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합니다.

카. 분할등기일

분할 후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분할등기(예정)일은 2017년 05월 01일입니다.

타.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03월 24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② 분할일정
-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소송 등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은 이를 명시하여 별도로 첨부하기로 합니다.

(7) 분할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분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첨부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목	분할 전 (분할회사)	분할 후	
		분할 후 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37,308,010	28,919,561	8,388,450
현금및현금성자산	5,068,436	4,068,436	1,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248,947	2,404,425	4,844,522
재고자산	19,032,346	16,488,701	2,543,645
당기법인세자산	1,014,399	1,014,399	
기타채권	2,364,456	2,364,456	
기타금융자산	1,010,298	1,010,298	
기타유동자산	1,569,129	1,568,847	283
II. 비유동자산	36,549,585	42,615,666	152,563
장기금융상품	2,500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3,360,402	3,360,402	
종속기업투자주식		6,218,643	
관계기업투자주식	1,117,087	1,117,087	
유형자산	14,295,586	14,273,585	22,001
무형자산	390,218	390,218	
투자부동산	15,180,208	15,180,20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197,051	2,066,489	130,562
기타비유동자산	6,534	6,534	

자산총계	73,857,596	71,535,227	8,541,012
Ⅰ. 유동부채	13,255,187	11,238,594	2,016,59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000,459	9,999,671	2,000,788
기타유동부채	1,211,704	1,195,899	15,805
당기법인세부채	43,025	43,025	
Ⅱ. 비유동부채	6,206,791	5,901,016	305,775
장기차입금	1,160,000	1,160,000	
퇴직급여채무	1,812,549	1,506,774	305,775
기타총당부채	160,756	160,756	
이연법인세부채	627,738	627,738	
기타비유동부채	2,445,748	2,445,748	
부채총계	19,461,978	17,139,610	2,322,369
Ⅰ. 자본금	4,130,000	4,130,000	1,000,000
Ⅱ. 자본잉여금	9,858,105	9,858,105	5,218,643
Ⅲ. 자기주식	-20,689,614	-20,689,614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542	-43,542	
Ⅴ. 이익잉여금	61,140,668	61,140,668	
자본총계	54,395,617	54,395,617	6,218,643
부채및자본총계	73,857,596	71,535,227	8,541,012
이연법인세부채	627,738	627,738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10월 31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함

주2)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함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Ⅰ. 유동자산	8,388,45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승계되는 사업의 현금성자산 및 운영자금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44,522	승계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2,543,645	승계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재고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83	승계되는 사업 관련 선급금 및 선급비용
Ⅱ. 비유동자산	152,563	
유형자산	22,001	승계되는 사업 관련 차량운반구 및 비품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0,562	승계되는 사업 관련 보증금
자산총계	8,541,012	
Ⅰ. 유동부채	2,016,59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00,788	승계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15,805	승계되는 사업 관련 선수금
II. 비유동부채	305,775	
퇴직급여채무	305,775	승계되는 사업 관련 인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부채총계	2,322,369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10월 31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함

주2)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함

[첨부3] 분할신설회사[(주)에이텍커머스]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 ①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텍커머스 라고 부른다.
- ② 영문으로는 ATEC COMMERCE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2.컴퓨터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3.컴퓨터 관련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 및 해외로부터 제공 받는 업무
- 4.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5.가전제품
- 6.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유지보수업
- 7.정보처리 컨설팅
- 8.전산업무 개발용역
- 9.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컨설팅
- 10.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그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 11.부동산임대업
- 12.산업용디스플레이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 13.산업용자동화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 및 임대업
- 14.전기공사업
- 15.컴퓨터프로그래밍
- 16.시스템통합 및 관리
- 17.전기전자 소재,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 18.정보통신공사업
- 19.위 각호에 따른 각종 용역업 및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tec-commerce.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식의 소각)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명의개서 등)

-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

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29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이사회

제3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사

제43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제44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49조(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 1.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에이텍

재무상태표

제 23 기 2015.12.31 현재

제 22 기 2014.12.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23 기	제 22 기
자산		
유동자산	23,685,576,244	52,238,558,798
현금및현금성자산	10,580,249,646	11,601,036,1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807,715,703	21,164,253,745
재고자산	3,990,172,662	9,075,801,745
기타금융자산	14,685,000	8,975,054,110
기타유동자산	292,753,233	1,422,413,017
비유동자산	38,843,527,801	47,385,721,117
장기금융상품	542,500,000	422,500,00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5,328,956,300	12,435,644,513
관계기업투자	1,117,086,996	758,693,494
유형자산	14,440,660,684	18,621,238,794
무형자산	292,585,972	1,060,680,674
투자부동산	15,414,610,403	12,321,148,81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00,593,320	1,751,478,320
기타비유동자산	6,534,126	14,336,504
자산총계	62,529,104,045	99,624,279,915
부채		
유동부채	11,615,906,013	30,670,893,8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741,517,634	28,419,805,238
단기차입금	370,804,606	846,384,000
기타유동부채	843,506,771	739,367,142
유동성장기차입금	93,750,000	125,000,000
당기법인세부채	1,566,327,002	540,337,492
비유동부채	4,392,427,030	3,505,377,186
장기차입금	0	93,750,000
퇴직급여채무	527,349,201	679,777,419
이연법인세부채	1,016,179,524	1,744,651,767
충당부채	390,650,305	0
기타비유동부채	2,458,248,000	987,198,000
부채총계	16,008,333,043	34,176,271,058
자본		
자본금	4,130,000,000	6,800,000,000

자본잉여금	7,662,995,980	12,282,964,227
기타자본	(21,183,533,151)	(813,231,49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33,657,682	(44,248,216)
이익잉여금	54,577,650,491	47,222,524,341
자본총계	46,520,771,002	65,448,008,857
자본과부채총계	62,529,104,045	99,624,279,915

2. 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에이텍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2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3 기	제 22 기
매출액	98,988,667,075	149,500,871,020
매출원가	75,976,985,633	127,308,243,737
매출총이익	23,011,681,442	22,192,627,283
판매비와관리비	18,631,130,033	18,428,616,992
영업이익(손실)	4,380,551,409	3,764,010,291
기타손익및금융손익	1,534,279,183	1,448,618,647
기타수익	2,258,794,603	1,866,601,536
기타비용	(804,939,182)	(625,296,390)
금융수익	212,203,102	215,250,398
금융비용	(131,779,340)	(7,936,89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1,538,184,403	149,010,252
지분법이익	37,171,298	350,226,595
지분법손실	(160,880,885)	0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661,893,990	0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0	(201,216,3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453,014,995	5,361,639,190
법인세비용	721,090,554	994,795,570
계속영업이익	6,731,924,441	4,366,843,620
중단영업이익	1,674,814,255	2,599,487,857
당기순이익	8,406,738,696	6,966,331,477
기타포괄손익	1,626,293,352	(452,846,92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377,905,898	(44,248,21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377,200,108	0

지분법자본변동	705,790	(44,248,2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48,387,454	(408,598,705)
보험수리적손익	248,387,454	(408,598,705)
총포괄손익	10,033,032,048	6,513,484,556
주당이익		
기본주및희석주당계속영업과중단영업이익	788	536
기본주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631	336